

2021회계년도 결산관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2년 4월 7(목) 14:0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이건영, 박수원, 이경훈,
신상진, 김태훈(7명)

■ 불참의원 : 박민태, 정재영, 김민수, 고민석(4명)

4. 안 건

가. 자문

- 1) 2021학년도 결산(안)
- 2) 고정자산 변동(안)

나. 심의 : 규정 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

다. 보고 : 규정 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1.	직제 규정 개정(안)	평가감사팀
2.	감사 규정 개정(안)	
3.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4.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개정(안)	기획예산팀
5.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6.	교원 포상 규정 개정(안)	
7.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교수지원팀
8.	연구년 규정 개정(안)	
9.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10.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총무팀
11.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12.	직원승진 규정 개정(안)	
13.	직원고과평정 규정 개정(안)	
14.	장학 규정 개정(안)	학생복지팀
15.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 개정(안)	홍보팀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 김진곤 의장이 성원 확인 후(총원 11명 중 7명 참석) 개회를 선언하다.

【자문】

1) 2021학년도 결산(안)

- 총무처 재무팀장이 2021학년도 결산(안)과 관련하여 수입현황 및 전년대비 수입 증감현황, 지출현황 및 전년대비 지출 증감현황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이 2021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시 법인 적립금을 처음부터 편성하는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 재무팀장이 (기획예산팀에서)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예측이 어려워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했음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과 이건영 의원이 기금 및 적립금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 재무팀장이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2) 고정자산 변동(안)

- 관리처 시설관재팀장이 고정자산 변동(안)과 관련하여 토지, 건축,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기계기구 주요 변동사유는 2021학년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과 실험실 중심으로 폐기가 많았음을 설명하다.
 - 집기비품 주요 변동사유는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였음을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이 차량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설관재팀장이 본교 차량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설관재팀장이 그 당시 건축가액으로 산정하며, 준공당시를 기준으로 함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학교의 토지 및 건물 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설관재팀장이 현재 본교의 경우도 음식점 임대 등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심의 : 규정 개정(안)】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일반대학원 교학팀장과 교육대학원 교학팀 과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일반대학원: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융합학과 신설
- 교육대학원: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산학협력 및 위탁교육을 위한 AI융합교육전공 신설 및 신설조건 충족을 위한 수학교육전공 폐지
- 주요 내용
 - 일반대학원: [별표1] 개정- 메타버스융합학과(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신설
 - 교육대학원: [별표2] 개정- AI융합교육전공 신설, 수학교육전공 폐지
- 이건영 의원이 본 안건이 절차상 적절하게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상정된 안건인지 질의하고, 평가감사팀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된 안건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 이경훈 의원이 수학교육전공 폐지되는 사안을 해당 전공 교수님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교육대학원 교학팀 과장이 수학교육전공 재적생이 없는 상황으로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동의하에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일반대학원 메타버스융합학과의 학위명이 '메타버스융합학석사 및 박사'인 것에 대하여 학위명의 경우 장기적으로 졸업생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건영 의원이 학위종별은 학문분야 영역분류표에 의거해야 하며, 대학원 학위명칭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건의하다.
 - 김진곤 의장이 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유리하도록 학과를 신설하고 학위명을 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일 듯하며, 기획처장에게 사업 조건 확인을 요청하다.
- **의결내용 : 사업조건(학위명칭) 확인 후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며, 대학원 학위명칭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하다.**

[추가 보고사항]

※ 협동과정 주관학과 교원 확인 결과, 사업에서 구체적인 학위명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음.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대로 학위명칭 '메타버스융합학석사 및 박사'를 유지하고, 추후 대학원 학위명칭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조정하기로 하다.

【보고 : 규정 개정(안)】

1) 직제 규정 개정(안)

- 기획처 평가감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각종 법령, 법인 감사 결과 권고사항,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등에 따라 본교에 인권센터 및 장애학생지원 부서 신설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인권센터(총장직속 기구) 직제 신설
- 인권센터 밑에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 학생상담실을 둠
- 현재 학생처 소속의 학생상담센터를 인권센터의 학생상담실로 이동
- 인권센터 직제 신설에 따른 보직기준 신설

▪ 박수원 의원이 장애학생지원실을 학생처 소속이 아닌 인권센터 소속으로 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획처장(참석자)이 학교별로 해당 부서들의 구성이 다양하며 장애학생의 인권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 본교 규모 및 현실적인 운영의 효율성 부분 등을 감안하여 구성한 것임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상황에 따른 방문 및 상담 부서(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센터에 상담실 및 지원실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고, 평가감사팀장이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성한 것임을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이 본 직제 규정 외 직제 변경과 관련된 타 규정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획처장(참석자)이 직제 규정을 먼저 개정하고 직제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된 타 규정을 차기 회의에 안건 상정함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다.

▪ 김진곤 의장이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을 통합하고 장애학생지원실, 학생상담실의 총 3개의 실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김태훈 의원도 김진곤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인권및성평등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 학생상담실로 구성을 제안하다.

▪ 김태훈 의원이 '제48조(보직) ②항 및 ③항에 모두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③항의 경우 4급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다.

▪ 김진곤 의장이 기획처장에게 의견을 묻고, 기획처장(참석자)이 보직기준의 직원 급수조정 등은 추후 기획관리위원회부터 안건 상정하여 논의한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⑯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①항에 인권센터장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 김진곤 의장이 제48조(보직)에 대한 정리(문구 통일)가 필요함을 언급하다.

▪ 의결내용 :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며, 보직기준의 직원 급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검토하여 상정 후 재논의하기로 하다.

☞ 3개의 실(인권및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후, 가능하다면 3개의 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

☞ 제48조(보직)은 아래와 같이 개정(문구 통일)

- ⑯항 별도 신설하지 않고,
- ①항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②항 처장, 대학혁신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③항 부속(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추가 보고사항]

※ 학생처장과 논의 결과,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함.

단, 타 대학교 사례 및 띄어쓰기 등을 고려하여 '인권·성평등상담실'로 신설하고자 함.

→ 인권센터(총장직속 기구) 자체 신설

→ 인권센터 밑에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총 3개의 실을 둠

→ 현재 학생처 소속의 학생상담센터를 인권센터의 학생상담실로 이동

2) 감사 규정 개정(안)

- 기획처 평가감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본교의 공익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2022(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하고자 함
 -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5장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장 신설
 - 기존 '제5장 보칙'은 '제6장'으로 장 이동
- 김진곤 의장이 운영지침(안) 6조의 '감사부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박수원 의원이 제2조(정의)에 '감사부서' 정의를 추가함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이 공익제보 접수는 부서가 아닌 기밀이 보장되는 접수자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운영지침(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 ☞ 제2조(정의) 4호에 '감사부서'정의 추가
 - ☞ 제4조(공익제보 대상) ②항 삭제
 - ☞ 공익제보의 접수는 감사부서가 아닌 기획처장에게 접수하는 것으로 수정

3)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 기획처 평가감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상위 규정인 '제위원회 설치 규정'의 임기(1년) 적용

- 실제 운용과 맞지 않는 규정상 임기를 수정
- 주요 내용
 - 현 2년에서 1년으로 임기 조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4)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개정(안)

-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대학 내 대학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광운발전전략기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 대학혁신위원회 신설
- 이건영 의원이 「광운발전전략위원회」 밑에 다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하관계 이해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이 위원회의 체계 및 기능 등에 있어 오해소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2조(구성) ① 이 규정에서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운발전전략기획위원회
 2. 광운발전전략관리위원회
 3. 광운발전전략실무위원회
 4. 광운혁신위원회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5)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본교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3조(구성), 제4조(임기), 제6조(회의) 개정
 - 신상진 의원이 의결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위원은 홀수로 구성해야 함을 언급하다.
 - 이건영 의원과 박수원 의원이 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성원 별 비율이 균등하도록 참여인원수를 규정에 명확하게 정의해 놓는 것을 제안하고, 김진곤 의장은 규정은 개정(안) 그대로 하되, 위원회 구성 시 구성원별 비율을 균등하게 적용하면서 유

동성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김진곤 의장이 기획처장에게 각종 평가시의 입장에서 의견을 묻고, 기획처장(참석자)이 각종 평가를 받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위원 구성 변경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다.

- 이건영 의원이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고려해 봤을 때 전문적인 위원 구성이 필요하며, 명확한 구성원 정의가 필요함을 언급하다.

- 김진곤 의장이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각종 평가 등을 고려하여 규정은 개정(안) 그대로 두고 운영상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위원 위촉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위원 구성 시 고려사항

: 교원의 경우,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 전문 교원 1인 포함

- 기획처장(참석자)이 기획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기금운용심의회 임기(2년)를 보고하고, 규정상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1년 임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임의 표현은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다.

- 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은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음을 고려사항으로 한다.

☞ 위원 구성 시 고려사항

: 교원의 경우,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 전문 교원 1인 포함

6) 교원 포상 규정 개정(안)

- 교무처 교수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참빛학술상의 수상 자격을 변경하고, 학과 자격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Best Teacher상 심사 대상에 온라인 100% 과목을 포함시키고자 함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7)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 교무처 교수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2021학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규정 정비 및 구체화

▪ 주요 내용

- 교수업적평가 규정 저서평가항목별 인정조건 개정
- 논문게재 학술지 JCR 등급 산정 시기, 기준 추가
- 김진곤 의장이 저서 인정 기준에서 독자대상기호가 “9” 표기되지 않은 저서를 학술서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8) 연구년 규정 개정(안)

- 교무처 교수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보직 수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교원에 동일한 기준 적용
 - 교원 책임시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주요 내용
 - 제6조(심의 및 선정) 개정
 - 제9조(보직에 대한 적용) 개정
- 이건영 의원이 연구년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교무위원의 불이익을 없애는 동시에, 교무위원을 마친 교수의 연구년 수행으로 인해 평교수의 연구년 수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을 언급하다.
- 김진곤 의장이 제6조(심의 및 선정)에서 현재 규정으로는 강의시수 미달한 경우 모두 환수가 되고 있는데 단서조항이 필요한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참석자)이 유동적인 사항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둠을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추가 보고사항]

※ 총무처 총무팀 차장이, 「9) 직원인사 규정 ~ 13)직원고과평정 규정」까지

총 5개 규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획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 가장 상위 규정인 「직원인사규정 제21조(휴직의 구분) ①항 4호」를 육아휴직과 기타 휴직으로 분리(4호 육아휴직, 5호 기타휴직)하고, 이후 규정에서 인용 시 문구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상정하였음을 보고함.

9)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과 총무팀 차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휴직의 사유(질병/상병/육아/기타)를 정비하고, 질병휴직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21조(휴직의 구분) : 항 분리 및 휴직 사유 정비, 질병휴직 요건 명확화
- 제22조(휴직기간) : 제21조 항 분리에 따른 자구수정
- 제24조(휴직의 효력) :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더 불어 근무연수에 반영
- 김진곤 의장이 유산, 조산 및 인공중절 수술 등 확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차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하다.
- 11)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진단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하게 적용 필요
 - 제21조(휴직의 구분)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0)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과 총무팀 차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육아, 공무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는 승급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16조(호봉의 재 획정), 제18조(승급의 제한) 개정
- 김진곤 의장이 직원보수 규정 제18조에서 괄호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단서 조항으로 작성할 것을 제시하다.

- 제18조(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을 제한한다. 단, 직원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업무 상 질병인 경우와 제3호, 제4호로 인한 휴직자는 제외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1)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과 총무팀 차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병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26조(병가) 개정
- 박수원 의원이 질병의 종류에 따라 대학병원이 아닌 기타 병원에서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총무팀 차장이 질병 휴직의 경우 유급휴직이며 남용 방지 차원 및 타 대학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하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예외지침을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 김태훈 의원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26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2) 직원승진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과 총무팀 차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육아, 공무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는 승진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9조(승진의 제한) 개정
- 김진곤 의장이 직원승진 규정 제9조에서 괄호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단서조항으로 작성할 것을 제시하다.

- 제9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단, 직원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업무 상 질병인 경우와 제3호, 제4호로 인한 휴직자는 제외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3) 직원고과평정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과 총무팀 차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육아, 공무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휴직 기간은 경력 평정기간 계산에 포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2조(평정대상), 제18조(경력의 기간계산), 제25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개정
 - 제4조(평정 원칙) 개정

- 제7조(자기기술서의 작성), 제8조(근무실적 등의 평정) 개정
- 제20조(가 · 감전평정) 개정
- [별표] 개정
- 김태훈 의원이 제2조 ②항에 ‘단’ 자구 삭제할 것과, 박수원 의원이 제2조 ①항 1호의 ‘직무에 종사한지’ →‘직무에 복귀한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박수원 의원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자기기술서 및 평정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총무팀’이 아닌 ‘총무팀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추가 보고사항]

※ 추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의견을 제시한 박수원 의원이 아래와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함.

- 의견을 제시한 취지가 평가자 지정권한자에게 인비서류(자기기술서 및 평정서)가 전달되어야 함이었는데, [별표 3] 등으로 보아 평가자 지정권한은 총무팀장이 아닌 총무처장임. (상위 부서장이 없는 경우 총무처장이 지정하는.....평가자가 된다.)
- 회의에서는 평가자 지정권한자를 지칭한다는 것이 “총무처장”이 아닌 “총무팀장”으로 잘못 지칭되었으므로, 제7조와 제8조에서 자기기술서 및 평정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총무처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 제시함.

※ 안건 상정부서(총무팀)에 확인한 결과, “총무처장” 지정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함.

- (참고사항) 동 규정 제13조(근무성적 평정표의 제출) ① 근무성적 평정표는 평정자가 인비로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및 제8조에서 자기기술서 및 평정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총무처장”으로 지정하기로 함.

- 총무처 총무팀장이 기획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총무팀 입장을 설명하다.
 - 기획관리위원회 위원이 자기기술서의 대면에 의한 제출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자유로운 평가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의견에 따라 결정하기로 가결함.
 - 해당하는 고과평정에 관한 개정(안)은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므로, 큰 원칙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조합과의 재협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함.
- 김태훈 의원은 대면 제출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다만 차후 전산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총무팀 차장이 올해 전산화 추진 계획 중에 있음을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이 누구에게 제출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듯 하며 가능하면 전산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2조(평정대상) ①항 1. 휴직 ·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복귀한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항. '단' 자구 삭제

- 제7조(자기기술서의 작성) 자기기술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제8조(근무실적 등의 평정) 밀봉하여 총무처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 의결내용 : 기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지만 자기기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는지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듯 하며, 상기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가결하다.

14) 장학 규정 개정(안)

- 학생처 학생복지팀 과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재난장학금 신설
 - 장학금 이연 필요
- 주요 내용
 - 재난장학금 신설
 - 이연휴학한 학생의 장학금 이연 허용
 - 근로, 빚솔재, SW장학금의 지급제한은 따로 정하도록 함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5)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 개정(안)

- 기획처 평가감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대리설명)
- 개정 사유
 - 상위 규정인 '제위원회 설치 규정'의 임기(1년) 적용
 - 실제 운용과 맞지 않는 규정 상 임기를 수정
- 주요 내용
 - 제4조(위원의 임기) 개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기타 의결사항】

- 안건 상정 부서 참석자 범위와 관련하여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참석하기로 하다.

6. 폐회

의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2년 4월 7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장 김진곤 (서명)

부의장 천성오 (서명)

평의원 이건영 (서명)

평의원 박수원 (서명)

평의원 이경훈 (서명)

평의원 신상진 (서명)

평의원 김태훈 (서명)

평의원 박민태 (서명) 부참

평의원 정재영 (서명) 부참

평의원 김민수 (서명) 부참

평의원 고민석 (서명) 부참